

퇴직연금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향

2009. 6. 11

류건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차 례

I. 고령화에 따른 노후소득보장체계 변화

II. 퇴직연금제도의 현황 및 제반과제

III. 퇴직연금제도의 노후소득보장 수준

IV. 노후소득보장제고를 위한 개선방향



I. 고령화에 따른 노후소득보장체계 변화

II. 퇴직연금제도의 현황과 제반과제

III. 퇴직연금제도의 노후소득보장수준

IV. 노후소득보장제고를 위한 개선방향

I. 고령화에 따른 노후소득보장체계변화

■ 고령화의 진전과 공적연금 재정부담

- ▶ 노년부양비는 2000년 11.4%에서 2050년 67.5%로 급속히 증가 예상
- ▶ 스페인, 이탈리아 다음으로 높은 노년부양비 전망

고령화의 진전과 노년부양비 전망 (%)

	2000	2010	2020	2030	2040	2050
덴마크	25.5	29.6	35.7	42.0	47.0	43.7
독일	28.0	34.1	38.6	50.3	57.0	56.1
스페인	28.7	30.7	35.2	44.7	59.8	68.7
프랑스	28.5	29.5	38.1	46.4	52.1	53.2
이탈리아	30.7	35.5	42.1	52.9	67.8	69.7
네덜란드	23.1	26.2	34.7	44.2	50.1	46.9
오스트리아	26.3	30.1	34.5	47.0	57.0	57.7
포르투갈	26.7	28.5	32.2	37.2	46.3	50.9
스웨덴	30.9	33.8	39.8	45.4	48.9	48.5
영국	27.8	28.5	33.9	43.1	49.1	55.9
한국	11.4	14.7	23.1	38.5	55.7	67.5

주: 노년부양비 = (65세 이상인구 / 15~64세 인구) × 100

I. 고령화에 따른 노후소득보장체계변화

■ 고령화의 진전과 공적연금의 재정부담

- ▶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공적연금의 재정부담 가중 (공적연금 수급자 증가)예상
- ▶ 기업과 개인 기능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노후소득보장체계 재구축 필요성 대두

고령화 단계와 공적연금의 재정부담 (%)

	부양비/ 노령인구	연금/ GDP	공적연금 보험요율	가입비율	연금재정	연금부채
1단계	5.7	0.6	8.0	15.7	47.1	5
2단계	8.5	3.3	13.7	45.4	34.9	40
3단계	18.9	8.5	24.6	89.4	-19.6	150
한국	8.4	1.1	9.0	39.0	43.9	25

I. 고령화에 따른 노후소득보장체계변화

■ 퇴직연금중심 노후소득보장체계 변화

▶ 퇴직연금이 공적연금을 대체하거나 공적연금 일부 적용제외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국제 비교

국가	제도형태	퇴직연금 기능
미국	DB형 또는 DC형	공적연금 보완
영국	DB형 또는 DC형	공적연금보완, 적용제외
일본	DB형 또는 DC형	공적연금보완, 적용제외
독일	DB형	공적연금보완
스웨덴	DB형 (DC형 전환)	공적연금보완
프랑스	DB형 (명목 DC형)	공적연금 일부대체
호주	DC형	공적연금 완전대체
캐나다	DB형	공적연금보완
네덜란드	DB형	공적연금 일부대체
덴마크	DC형	공적연금 일부대체
핀란드	DB형	공적연금 일부대체
스위스	DB형 또는 DC형	공적연금 일부대체
이탈리아	DC형	공적연금보완

I. 고령화에 따른 노후소득보장체계변화

■ 퇴직연금중심 노후소득보장체계 변화

▶ 퇴직연금활성화 차원에서 퇴직연금가입을 의무화는 경향 뚜렷(가입률 90%이상)

퇴직연금 가입형태의 국제비교

국가	제도형태	가입률	보험요율
호주	MO/P	> 90%	9%
덴마크	MP	> 90%	1%
헝가리	MP	58%	8%
아이슬란드	MO	> 90%	10%
멕시코	MP	31%	6.275%
네덜란드	QMO	> 90%	-
노르웨이	MO	> 90%	2%
폴란드	MP	49%	7.3%
슬로바키아	MP	45%	9%
스웨덴	MP	> 90%	2.5%
스위스	MO	> 90%	7~18%
영국	VO	43%	9%
미국	VO	47%	9%
캐나다	VO	39%	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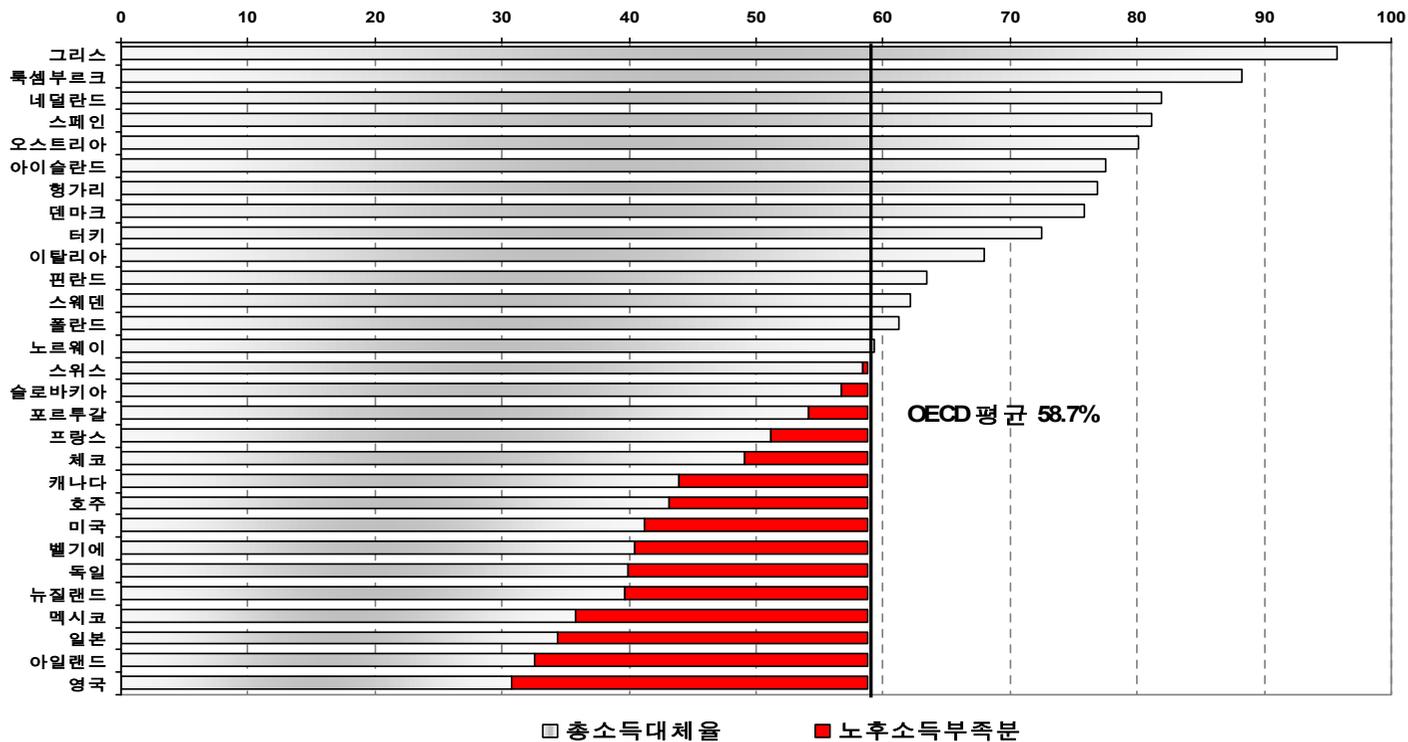
주): M=강제가입, V=임의가입, QM=반강제가입, O=기업, P=개인

I. 고령화에 따른 노후소득보장체계변화

■ 퇴직연금중심 노후소득보장체계 변화

▶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부족분을 퇴직연금 등으로 보전하는 방향으로 연금개혁추진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및 노후소득부족분



주: 노후소득부족분(retirement savings gap)은 각국의 공적연금 소득대체율과 OECD 평균 소득대체율의 차이를 의미함

자료: OECD, Pensions at Glance, 2007



I. 고령화에 따른 노후소득보장체계 변화

II. 퇴직연금제도의 현황과 제반과제

III. 퇴직연금제도의 노후소득보장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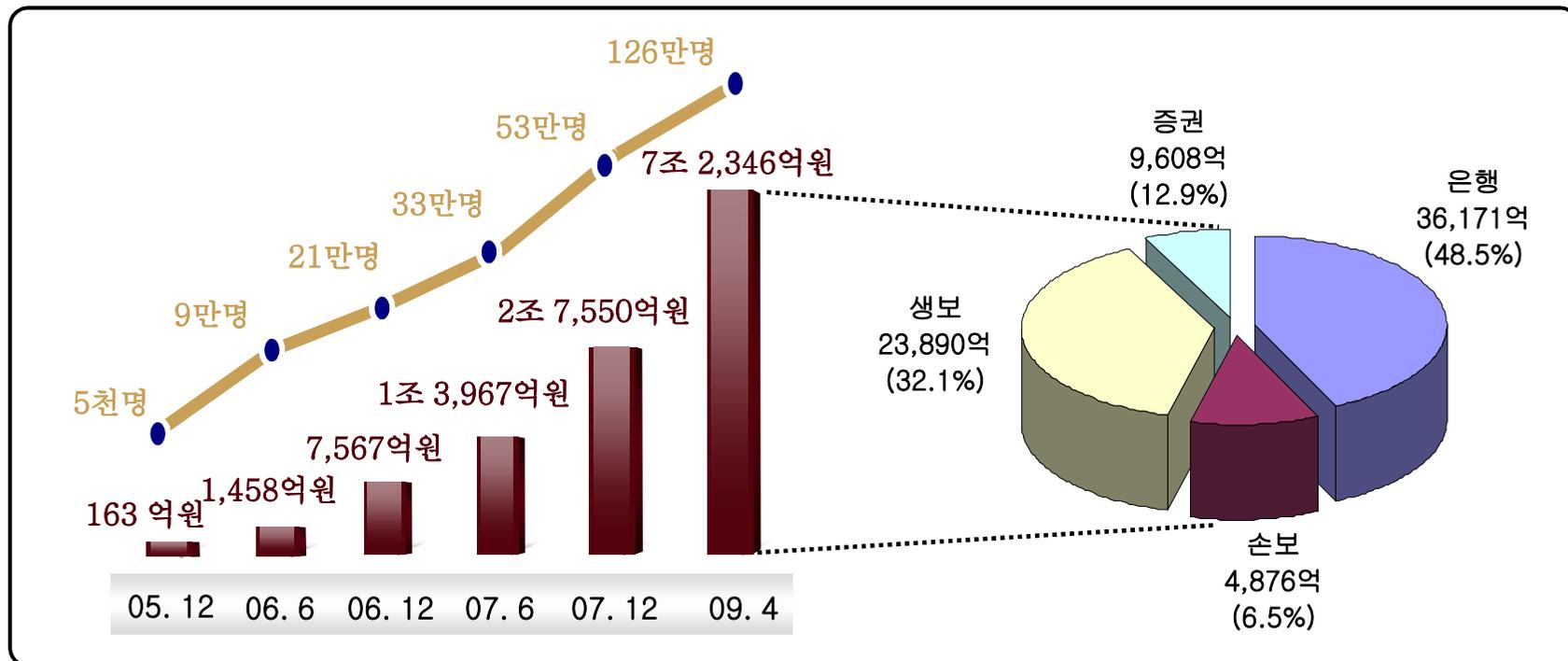
IV. 노후소득보장제고를 위한 개선방향

II. 퇴직연금제도의 현황 및 제반과제

■ 퇴직연금제도의 운용현황

- ▶ 적립금 규모: 7조 2,346억원, 가입자: 5인 이상 사업체근로자 126만명
- ▶ 적립금 비중: 은행 > 생보 > 증권 > 손보 순

퇴직연금 시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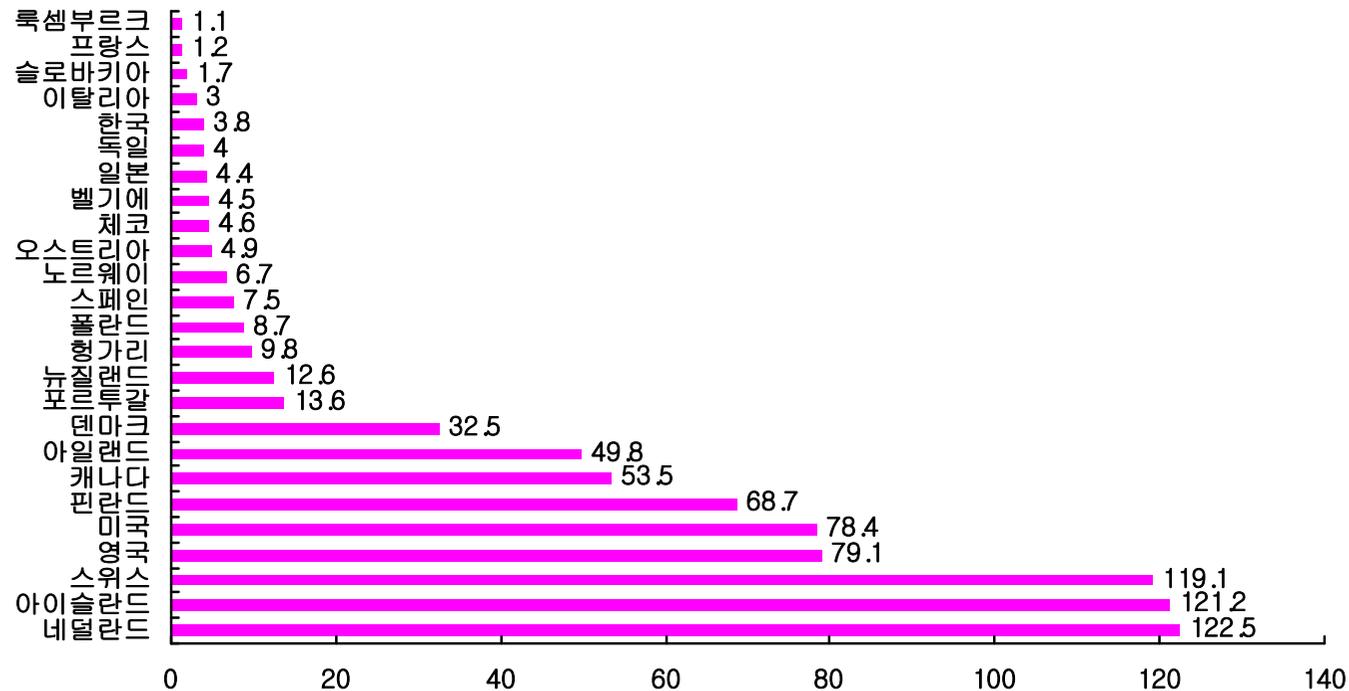


II. 퇴직연금제도의 현황 및 제반과제

■ 퇴직연금제도의 운용현황

- ▶ 우리나라: GDP 대비 연기금(퇴직+개인)자산 비중 3.8% 불과(2008년 기준)
- ▶ 아이슬란드, 스위스, 네덜란드 등: 연기금 자산 규모가 GDP를 상회

GDP 대비 연기금자산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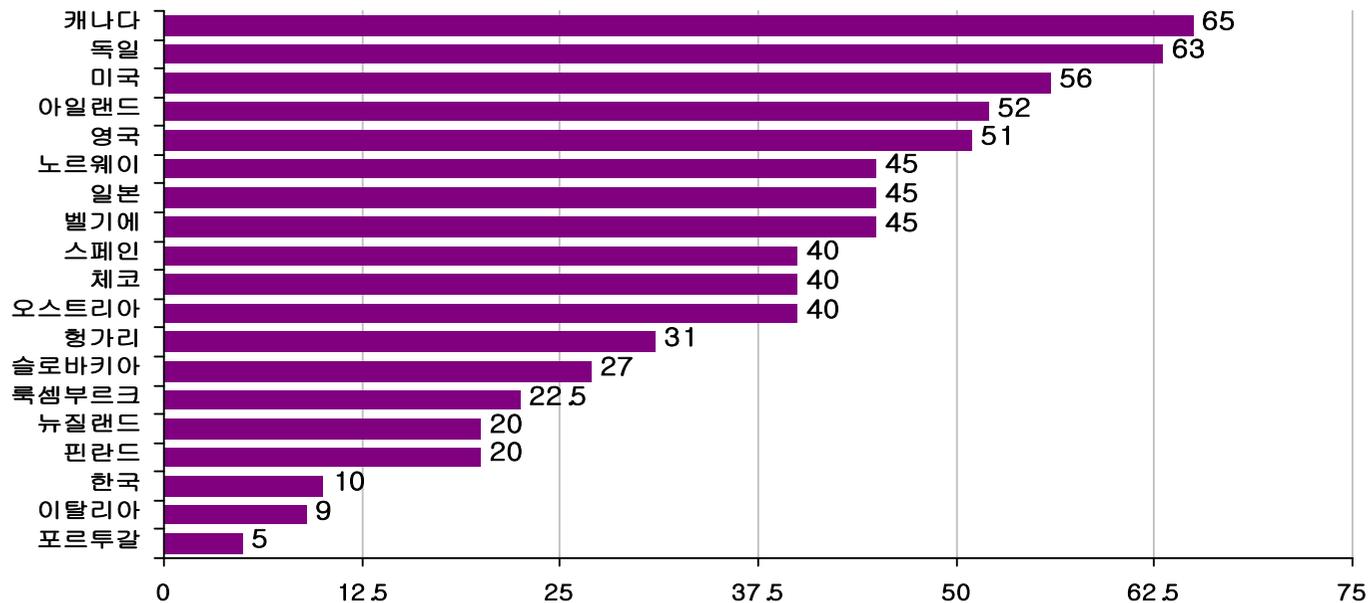
주: 우리나라는 2008년 12월 기준 (퇴직+개인)

II. 퇴직연금제도의 현황 및 제반과제

■ 퇴직연금제도의 운용현황

- ▶ 임의가입형태를 띄고 있는 독일, 영국, 미국 : 50%이상의 높은 가입률 시현
- ▶ 과감한 연금세제혜택으로 사적연금의 가입을 적극 유도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 가입률(%)



주: 사적연금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합계(한국은 2008년 12월 현재 5인이상사업장 가입률 기준)
자료: OECD, Pensions at Glance, 2007

Ⅱ. 퇴직연금제도의 현황 및 제반과제

■ 퇴직연금제도의 운용현황

- ▶ 퇴직연금계약은 주로 소기업(77.8%) 중심으로 체결
- ▶ 대기업은 DB형, 중기업은 DB 및 DC형, 소기업은 IRA기업형 중심으로 계약 체결

회사규모별 계약체결 실태

(단위: 건, %)

기업규모	DB형		DC형		IRA 기업형		계	
	건수	비중 ¹⁾	건수	비중 ¹⁾	건수	비중 ¹⁾	건수	비중 ²⁾
대기업	535	72.3	205	27.7	-	-	740	1.4
중기업	5,470	49.9	5,488	50.1	-	-	10,958	20.8
소기업	7,546	18.4	14,472	35.3	18,941	46.3	40,959	77.8
계	13,551	25.7	20,165	38.3	18,941	36.0	52,657	100.0

주: 1) 기업규모 내에서의 비중 2) 기업규모별 비중

3) 대기업은 300인 이상, 중기업은 300인 미만 20인 초과, 소기업은 20인 이하의 기업임

II. 퇴직연금제도의 현황 및 제반과제

■ 퇴직연금제도의 운용현황

- ▶ 운용리스크 부담, 실적배당형 상품보다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대한 근로자 선호도 증대
- ▶ 실적배당형: DB형(5.2%), DC형(32.0%), IRA기업형은 채권형 펀드 선호

연금형태별 적립금 운용 비중

원리금 보장형					실적 배당형				
	DB형	DC형	IRA 기업형	IRA 개인형		DB형	DC형	IRA 기업형	IRA 개인형
예적금	46.6%	46.5%	81.9%	55.7%	주식형펀드	0.6%	-	-	-
금리확정형 보험	33.2%	5.4%	1.0%	10.0%	혼합형펀드	0.2%	-	-	-
금리연동형 보험	8.9%	10.7%	1.1%	13.5%	채권형펀드	3.9%	28.4%	14.8%	6.3%
국공채	0.0%	0.1%	-	0.5%	기타펀드	0.4%	0.4%	0.0%	0.0%
원리금보장 ELS	4.4%	2.6%	-	1.3%	실적배당형 보험	0.1%	3.2%	0.2%	9.7%
원리금보장 소계	93.1%	65.3%	84.0%	81.0%	실적배당형 소계	5.2%	32.0%	15.0%	16.0%

II. 퇴직연금제도의 현황 및 제반과제

■ 퇴직연금제도의 제반과제 : 자산운용측면(우리나라)

- ▶ 질적규제(자율규제)보다 건전성제고차원에서 양적규제(Legal List Rule) 지향
- ▶ 근로자의 운용상품선택폭 및 금융시장의 활성화에 제약가능성 존재

퇴직연금 자산운용규제

유형	주식	부동산	채권	펀드	대출	예금
DB	30%	50%	제한없음 (BBB- 이상)	주식형·혼합형: 50% 채권형: 제한없음	투자 금지	제한 없음
DC	투자 금지	투자 금지	제한없음 (BBB- 이상)	주식형·혼합형: 투자금지 채권형: 제한없음	투자 금지	제한 없음

II. 퇴직연금제도의 현황 및 제반과제

■ 퇴직연금제도의 제반과제 : 자산운용측면(외국)

- ▶ 영미 등 앵글로색슨국가 : 선관주의(prudent Men Rule)에 입각한 질적규제로의 전환
- ▶ 독일 등 대륙국가 : 건전성 강화차원에서 최소한도의 양적규제를 견지

OECD 주요국의 자산운용규제

국가	주식	부동산	채권	펀드	대출
호주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가입자에 대한 대여 및 대출거래 금지)
영국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고용주의 차입 및 보증금지
미국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고용주의 차입 및 보증금지
캐나다	30%	25%	제한없음	30%	제한없음
독일	30%	25%	50%	50%	50%
덴마크	40%	40%	제한없음	40%	제한없음

II. 퇴직연금제도의 현황 및 제반과제

■ 퇴직연금제도의 제반과제 : 감시기능체계

- ▶ 계약형 지배구조상의 감시기능수준은 OECD의 권고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
- ▶ OECD에 준하는 감시기능장치 (이익상충 문제 해소장치) 마련 필요

감시기능체계 비교

국가	OECD 권고	우리나라
감시자 기능	운용관련자 감시 강화	제3자적 감시기능장치 부재 (건전성 확인 및 검증 등)
사용자 관련	사용자의 책임 엄격	사용자 관련 규정 미흡
내부통제시스템	내부통제시스템 마련요구	별도 규정 및 내용 없음
공시의무	보고,통지, 신고 의무화	최소한도의 보고, 통지의무 존재
보고체계	적시적인 보고채널 마련	주무부처와 협의사항만 존재 규정/지침이 아닌 지시에 의존
수탁자 책임	수탁자별 책임 명확화	퇴직연금사업자 중심 규정 책임,의무, 권한 관련 규정미흡

II. 퇴직연금제도의 현황 및 제반과제

■ 퇴직연금제도의 제반과제 : 수급권 보호장치(우리나라)

- ▶ 우리나라도 퇴직금우선변제, 임금채권보장기금 등 협의의 수급권 보호장치는 존재
- ▶ 다만, 기업도산시 완전한 수급권 보장의 어려움 존재 : 퇴직연금활성화 제약

퇴직연금 지급보장장치

	퇴직금 우선변제	임금채권보장기금
근퇴법	제11조	임금채권보장법 8조
보상범위	최근 3년 분에 한정	최근 3년분, 상한액 설정
적용대상	퇴직연금제로 확대	법정퇴직금에 한정
특징	사업주 재산이 있을시 지급	지급보증공사 역할 일부담당
영향	기업 및 금융기관 도산 방지 ⇒ 근로자 수급권 미흡	

II. 퇴직연금제도의 현황 및 제반과제

■ 퇴직연금제도의 제반과제 : 수급권 보호장치(외국)

- ▶ 선진국 : 기업 도산시, 연금지급보장제도 도입에 의한 연금지급 의무화
- ▶ 미국, 영국 등은 Take - Out 방식, 독일, 스웨덴 등은 Buy - Out 방식으로 연금지급보장

퇴직연금 지급보장장치

	정부기관	민영기관
국가	미국, 영국, 캐나다, 스위스	독일, 스웨덴, 핀란드, 일본
운영방식	Take-over (예외: 캐나다)	Buy-out (예외: 스위스)
지급보장의 안정성	국가기관 직접보장으로 안정성 우위	민영보험으로 해결 (단, 최종적인 책임은 국가)
비효율성	자산운용수익으로 비용을 일부 충당	비교적 단순한 운영으로 비용우위

II. 퇴직연금제도의 현황 및 제반과제

■ 퇴직연금제도의 제반과제 : 연금전환유인체계(우리나라)

- ▶ 연금세제혜택의 미흡 등으로 연금전환을 통한 노후소득보장시스템 작동에 한계노출
- ▶ 법정퇴직금 존재, 개인퇴직계좌 기능 미약 등

퇴직연금 전환 유인 체계

	세부 내용
연금세제	퇴직급여 불입액 중 소득공제한도 3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의 퇴직급여 총당금 손비한도 (현재 35% → 2009년 이후 30%) ▪ 퇴직연금 수령시 소득공제한도 900만원 ▪ 기존 퇴직금에 대한 소득공제한도 45%
중간정산제	현재 허용 (개정안 : 제한)
중도인출제	중도인출 허용 (개정안 : 대통령령이외 원칙금지)
퇴직금 일시금 수령	제약 없음(개정안: 55세까지 일시금 지급제한)
법정퇴직금제	높은 만족도 유지
개인퇴직계좌(IRA)	근로자에 국한 (개정안 : 자영업자 확대)

II. 퇴직연금제도의 현황 및 제반과제

■ 퇴직연금제도의 제반과제 : 연금전환유인체계(외국)

- ▶ 호주 등은 과감한 연금세제 혜택부여로 퇴직연금 전환 유도
- ▶ 퇴직연금제도가 실질적 노후소득보장기능을 담당하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강화

퇴직연금 전환 유인 체계

	세부 내용
연금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주: 퇴직연금 기여액에 대해 최저 세율 (15%) 적용 • 미국: 2007년 기준, 1만 5,500달러까지 세제혜택
중간정산제	폐지
중도인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중도인출 불가 • 미국: 사망, 상해 등 예외적으로 인정 (중도인출 시 10% 페널티세 부과)
퇴직금 일시금 수령	대부분 퇴직일시금 수령을 제한
법정퇴직금제	미존재
개인퇴직계좌(IRA)	근로자, 자영업자, 전국민으로 확대 (개인연금 기능 담당)

II. 퇴직연금제도의 현황 및 제반과제

■ 퇴직연금제도의 제반과제 : 사업자관련 규제체계

- ▶ 선진국 : 적절한 퇴직연금사업자 관련 규제를 통해 공정 경쟁질서 유지 노력
- ▶ 우리나라 : 퇴직연금시장의 공정경쟁차원에서 규제감독체계상의 문제 일부 대두

사업자 관련 규제 체계

	우리나라 (근퇴법 및 감독규정 등)	주요국 (미국, 영국, 일본)
등록기준	재무건전성, 인적, 물적요건	인적요건의 강화 (보험계리사중심 원칙)
선정기준	특별한 규정 없음	- 안전성, 운용능력 등을 고려한 사업자선정 가이드 라인 제시 - 종합평가에 의한 사업자 선정 및 평가 유도
계약기준	- 보험계약 및 신탁계약 허용 - 은행 자행예금 허용 등으로 금융권간 공정경쟁저해 문제 노출	- 보험계약 및 신탁계약 허용 - 사업자 불공정 영업행태방지 및 수탁자책임강화
적격기준	특별한 규정 없음	사업자의 전문지식요구 등 적격 및 자격기준강화



I. 고령화에 따른 노후소득보장체계 변화

II. 퇴직연금제도의 현황 및 제반과제

III. 퇴직연금제도의 노후소득보장수준

IV. 노후소득보장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Ⅲ. 퇴직연금제도의 노후소득보장수준

■ 적정(목표) 소득대체율 : 은퇴후 소비/ 은퇴전소득

- ▶ 노동패널 데이터(1-9차)를 활용하여 추정된 가구소비함수적용, 소득대체율산출
- ▶ 가정 : 소득, 소비에 대해서는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실질가치로 환산

근로자 가구 적정 소득대체율

구분		평균	표준편차
모형1 (가구규모효과 미고려)	은퇴 후 소비 / 은퇴 전 소비	1.0428	0.3918
	은퇴 후 소비 / 은퇴 전 소득	0.6495	0.3624
모형2 (가구규모효과 고려)	은퇴 후 소비 / 은퇴 전 소비	0.9813	0.4024
	은퇴 후 소비 / 은퇴 전 소득	0.6147	0.4178

Ⅲ. 퇴직연금제도의 노후소득보장수준

■ 실질(예상) 소득대체율 : 은퇴후 연금소득/ 은퇴전소득

- ▶ 평균소득계층이 근로기간동안 가입으로 기대할 수 있는 예상 소득 고려
- ▶ 가정 : 근로기간(25년, 30년, 35년), 은퇴기간 (24.6년), 임금상승률(1998-2008), 투자수익률(2006-2008년 6월 DC형 퇴직연금 투자수익률: 1.54%)

퇴직연금 실질 소득대체율

25년 가입	30년 가입	35년 가입
퇴직연금	퇴직연금	퇴직연금
9.4%	11.0%	12.5%

Ⅲ. 퇴직연금제도의 노후소득보장수준

■ 연금제도에 의한 노후소득보장 수준

- ▶ 적정소득대체율은 64.9%인데 반해 실질 소득대체율은 47.5%에 불과
- ▶ 근로기간 35년 가정 :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퇴직연금소득대체율 30%에 훨씬 못미침
 - 투자수익률제고 및 퇴직연금 활성화를 통한 소득보장기능제고 노력필요

공사연금 노후소득보장수준(예시)

2층 퇴직연금	30%	퇴직연금	12.5%
1층 공적연금	30%	국민연금	35%

World Bank 등 국제기구 권고안:
60 ~ 70 %

우리나라의 실질 소득대체율 :
47.5 %

Ⅲ. 퇴직연금제도의 노후소득보장수준

■ 투자수익률에 따른 실질 소득대체율 변화

- ▶ 투자수익률 증가에 따른 소득대체율 증가효과 뚜렷 : 연금자산배분(연금ALM)전략절실
- ▶ 가입기간 35년기준, 투자수익률 3%증가시 퇴직연금 소득대체율 29.3% 시현

투자수익률과 실질소득대체율

투자수익률	연금가입기간		
	25년	30년	35년
현 재	9.4%	11.0%	12.5%
2.54%	12.0%	14.3%	16.5%
3.54%	15.1%	18.5%	22.0%
4.54%	19.1%	24.0%	29.3%



I. 고령화에 따른 노후소득보장체계 변화

II. 퇴직연금제도의 현황 및 제반과제

III. 퇴직연금제도의 노후소득보장수준

IV. 노후소득보장제고를 위한 개선방향

IV. 노후소득보장제고를 위한 개선방향

■ 퇴직급부체계의 개선

- ▶ 법정퇴직금제 점진적 폐지, 중간정산제 제한, 신설사업장 가입의무화(예외불인정)
- ▶ 상해 및 질병이외 인출시 패널티세 부과 등 퇴직연금 급부체계 개선 필요

	현황	개선	
		단기 (2009-2010)	장기 (2011년~)
법정퇴직금제	퇴직급여제도로 존속	법정퇴직금제 메리트 완화	점진적 폐지
중간 정산제	제한적 허용 (근퇴법개정안)	제한적 허용 (한시적)	허용금지(원칙) (패널티 부여)
퇴직연금가입	신설사업장가입 의무화 부분인정 (근퇴법개정안)	- 신설사업장 가입의무화 (세제지원병행) - 일시금 수령 엄격제한	가입의무화
중도인출제	임의적 허용 (주택 구입 등)	특수한 경우로 한정 (사망 및 질병 시)	인출시 패널티세 부여

IV. 노후소득보장제고를 위한 개선방향

■ 연금세제체계의 개선

- ▶ 퇴직연금세제혜택 미흡, 퇴직급여충당금 손비한도의 과도한 인정 등의 문제 노출
- ▶ 장기적으로 미국수준의 연금세제혜택부여, 퇴직급여충당금 손비한도 폐지 등 필요

	현황	개선	
		단기(2009-2010)	장기(2011년~)
퇴직급여불입액 소득공제한도	300만원 (개인연금합산)	개인연금소득공제와 구분, 별도300만원 설정	미국수준으로 상향조정 (단, 한도설정)
퇴직급여충당금 손비한도	30% (기간과 무관)	단계적 축소 (기간과 연계)	완전폐지
퇴직연금 수령시 소득공제한도	900만원	단계적 공제한도 인상	
기존퇴직금 소득공제한도	45%	단계적 공제한도 인하	

IV. 노후소득보장제고를 위한 개선방향

■ 운용규제체계의 개선

- ▶ 퇴직연금 규제완화에 따른 리스크(투자리스크, 소송리스크) 증대에 철저 대비
- ▶ 규제완화 보호 조치 강화(수급권보호, 수탁자 책임)전제: 질적규제로 점진적 전환

	현황	개선	
		단기(2009-2010)	장기(2011년~)
DB형	양적규제방식 (위험자산: 일부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체계유지 • 계약형 지배구조, 수급권보호, 수탁자책임장치 한계 존재 • 근로자 안전성 선호, 금융시장 불안전성 상존 	최소한도의 양적규제 견지 (수급권보호 전제)
DC형	양적규제방식 (위험자산: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제완화보완조치개선 	질적규제로의 전환 (수탁자책임전제)

IV. 노후소득보장제고를 위한 개선방향

■ 지급보장체계의 개선

- ▶ 연금수리에 입각한 연금재정 적정성 검증, 위법시 수탁자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
- ▶ 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의 보완과 지급보증제도 도입(정부 재정지원 검토)

	현황	개선	
		단기(2009-2010)	장기(2011년~)
책임준비금 검증 및 확인	검증근거신설 (근퇴법 개정안)	신설조항 보완 -검증주체책임 명확	근퇴법규정 전면개정 • 미일의 관련법 준용
수급권 보호장치 (DB)	협회의 보호장치만 존재 (DC: 예금보험제 적용)	퇴직금우선변제 및 임금채권보장기금제 보완	지급보증제도 도입 • 정부의 재정 지원 검토

IV. 노후소득보장제고를 위한 개선방향

■ 연금운용형태의 개선

- ▶ 다양한 형태의 퇴직연금제 도입으로 퇴직연금 선택폭 증대와 IRA 역할제고 필요
- ▶ DC형 퇴직연금제 다양화(SEP, SIMLIE 등), 미국식 개인퇴직계좌(IRA)제 도입검토 등

	현황	개선	
		단기(2009-2010)	장기(2011년~)
DB형	- 비계리적 상품운용 - 상품운용 다양성 결여 (근로자 선택폭 제약)	CB형 퇴직연금상품 도입 · 운용	전형적 DB형 상품운영체계 (연금수리개념 적용)
DC형 (IRA포함)			DC형 퇴직연금상품의 다양성 확보 (다양한 IRA제도 도입)

IV. 노후소득보장제고를 위한 개선방향

■ 감시기능체계의 개선

- ▶ 근로자와 수탁자(사용자, 연금사업자 등)간의 이익상충문제해소 방안 마련
- ▶ OECD 권고기준에 준하는 수준으로 감시기능체계 개선(감시자 기능, 공시 의무 등)

	현황	개선	
		단기(2009-2010)	장기(2011년~)
감시자 기능	감시자의 역할 제한적	감시자의 역할 및 책임 명문화	
사용자관련규정	사용자 제재조치 미흡	-현행 체계 및 골격유지	-사용자의 책임강화 및 제재 조치 강화
내부통제시스템	특별한 규정없음	내부통제시스템 가이드라인 마련작업	내부통제시스템관련 규정신설 마련 검토 (퇴직연금 감독규정 등)
보고·통지·공시의무	미흡	일부 미비점 보완	근퇴법 및 감독규정 개정으로 자율적 시장기능 제고

IV. 노후소득보장제고를 위한 개선방향

■ 사업자관련 규제정책의 개선

- ▶ 공정 경쟁 규제체계의 확립 등으로 양질의 운용서비스를 근로자에게 제공노력
- ▶ 퇴직연금 사업자 관련 규제정책의 재검토, 이를 통한 공정 경쟁질서 확립

	현황	개선	
		단기(2009-2010)	장기(2011년~)
등록기준	재무건전성/인적/물적요건 존재 (인적요건취약)	인적요건의 강화 (연금계리 인력중심)	
선정기준	퇴직연금사업자 선정관련 정보부재 (정보비대칭문제)	최소한의 선정가이드라인 제시	- 종합평가방식으로 평가 체제전환 (성과평가체계 재검토 등) - 사업자 선정이유 명시검토
계약기준	신탁 및 보험계약 허가	자행예금운용시, 본래 신탁개념과의 상충문제 보완 등	
자격기준	별도 규정 없음	적격 및 자격기준 강화 (전문지식 습득 요구 등)	

감사합니다 !